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7. 3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기본사업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신설하고, 표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 를 “(정의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완전히” 를 “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” 로 함.(안 제2조)
- 나. “다음” 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 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” 으로, 제3호에 “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” 을 신설하고, 제4호를 삭제함.(안3조)
- 다. 제목 “(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을 “(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” 를 “사항을 심의한다” 로 함.(안 제5조)
- 라.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제4항 단서조항 중 “전임자” 를 “전임 위원 임기” 로 하고, 제5항

중 “직무” 를 “업무” 로 하며, 제6항 중 “위원회는” 을 “위원회에” 로 함.(안 제6조)

마. “이를” 을 “위원장이 회의를” 로 함.(안 제7조제1항)

바. “및 관계전문가 등” 을 “등” 으로, “수당·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” 를 “수당과 여비” 로 함.(안 제9조)

사. “대하여” 를 “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에 따라” 로 함.(안 제11조제2항)

아. “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” 를 “조례의 시행” 으로 함.(안 제13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 를 “(정의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완전히” 를 “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” 로 한다.

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 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 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

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“(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을 “(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” 를 “사항을 심의한다” 로 한다.

안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전임자” 를 “전임 위원 임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직무” 를 “업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원회는” 을 “위원회에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이를” 을 “위원장이 회의를” 로 한다.

안 제9조 중 “및 관계전문가 등” 을 “등” 으로, “수당·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” 를 “수당과 여비” 로 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대하여” 를 “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에 따라” 로 한다.

안 제13조 중 “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” 를 “조례의 시행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건강”이란 <u>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.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3조(기본사업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/u>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</u></p> <p>4. <u>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등</u></p> <p>제5조(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</u></p> <p>2.·3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본사업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--.</u></p> <p>1.·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<u>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</u></p> <p><삭 제></p> <p>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

3.·4. (생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

-----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5. (원안과 같음)

③ (원안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원안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원안과 같음)

<삭제>

2.·3. (원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④ -----
-----.
----- 전임 위원
임기-----.

⑤ -----
-----업무-----

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
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
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
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
장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
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
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
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
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
·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
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소속
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
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니한다.

제11조(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
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
공헌이 많은 구민, 단체 등에
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-----.

⑥ 위원회에 -----

-----.

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-----

----- 위원장이 회의를
-----.

② (원안과 같음)

제9조(수당 등) -----
----- 등 -----
----- 수당과 여비

-----.

제11조(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
등) ① (원안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대하여는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
례」에 따라 -----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
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
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

-----.